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30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20238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30051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한상규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5. 11.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98,744,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74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26,957,1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6,957,1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9. 8. 30.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24. 8. 29.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및 보증금액 760,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8.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으로 D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2) C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와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①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

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재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신보의 사전 동의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B 및 C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나.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취득

1) C는 D은행의 차용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12. 28. D은행에 C를 대위하여 964,256,124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원고의 동의 없이 C 보유 지분을 처분하였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보증한 D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책임경영이행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D은행에 964,256,124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1. 9. 30. 'B은 원고에게 964,256,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8.부터 2021.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737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 행위

1) B은 201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고는 2012. 1. 5. B과 혼인한 후 2019.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2020. 5.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0년33410호, 이하 위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

1. B과 피고는 이혼한다.

2. B과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B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3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12억 원에 대하여는 2020. 5. 부터 2040. 4.까지 20년 동안 월 5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20. 11. 30.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20억 원은 2022. 5. 20.까지 지급한다.

나. 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B은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피신청인)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수원지방법원 2019. 6. 3. 접수 제 48690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그 외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모두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다.

라. B은 피고에게 2020. 5.부터 2020. 12.까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240만 원을 매월 지급하거나 대신 납부해 준다.

3) 피고는 2021.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61,000,000원 중 사해행위 당시부터 마쳐져있던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 234,042,803원을 제외한 226,957,197원(= 461,000,000원 - 234,042,803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020. 5. 19. 이루어진 점, C는 2019년 외부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점, C는 2020. 6. 11.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한 점, 원고는 2020. 12. 28. D은행에 대출금 964,256,124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이루어진 2020. 5. 19. 무렵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B에게 책임경영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B의 무자력 여부

갑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2020. 5.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B는 2020. 5. 19. 당시 원고의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아래 표 1과 같이 총 2,996,49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 1〉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발생일	채무 성격
H	28,289,000	2020. 4. 8.	대출채무
I저축은행	43,340,000	2020. 4. 7.	대출채무
J은행	500,000,000	2020. 3. 13.	보증채무
D은행	1,139,000,000	2019. 8. 22.	보증채무
E은행	11,624,000	2018. 12. 5.	보증채무
K캐피탈	81,886,000	2020. 2. 4.	보증채무
L캐피탈	78,849,000	2020. 1. 16.	보증채무
E은행	223,511,000	2019. 6. 3.	대출채무
M조합	600,000,000	2016. 9. 7.	대출채무
M조합	290,000,000	2016. 10. 28.	대출채무
소계	2,996,499,000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1) B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재산 내역

앞서 든 증거, 갑 제7, 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직후 2021. 1. 14.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수원지방법원 N),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은 위 부동산의 가액을 461,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B은 2019. 6. 3. E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 2020. 12. 28. 기준으로 B의 E은행에 대한 채무가 223,511,000원이었던 사실, B은 2020. 3.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과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인 461,000,000원을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다. 한편 B의 E은행에 대한 채무 223,511,000원은 금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보이고,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020. 12. 28.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과 시기적으로 근접하므로 B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표 1과 같은 각종 보증채무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채무의 성질, 명의, 채무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사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207,489,000원(= 461,000,000원 - 223,511,000원 - 30,000,000원)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재산 내역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전인 2019. 10. 31. 송파구 P건물 Q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채권 1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고의 혼인 기간이 7~8년에 이르는 점, 혼인 기간 동안 B이 사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던 점,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던 점,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B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과 보증금반환채권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오피스텔의 등기부에는 거래가격이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70,000,000원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위 오피스텔의 가액은 피고가 2019. 10. 18. 위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의 가액인 260,000,000원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의 재산은 190,000,000원(= 260,000,000원 + 100,000,000원 - 170,000,000원)이다.

3) 재산분할 비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7~8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피고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B의 사업을 도와 부부공동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점, 결혼기간 동안 B의 사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B과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397,489,000원(= 207,489,000원 + 190,00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분할 금액은 198,744,500원(= 397,489,000원 × 1/2)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무렵 순 자산 19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차액인 8,744,500원(= 198,744,500원 - 19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순가치 237,489,000원(= 461,000,000원 - 223,511,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한편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O은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은 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207,489,000원(= 237,489,000원 - 30,000,000원)이라 할 것인데 그중 198,744,500원(= 207,489,000원 - 8,744,500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5)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996,49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마.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B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산을 받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와 피고가 부부 관계였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B은 아무런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게 된 점, 피고 소유 재산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서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외에도 상당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서 사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98,744,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위 198,744,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웅, 판사 이유섭, 판사 백송이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아파트 T동

[도로명주소] 수원시 영통구 U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경사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42.818㎡

1층 436.670㎡

2 내지 4층 429.672㎡

5 내지 18층 423.82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R 대 3356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8층 V호 철근콘크리트조 84.5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3565.8분의 50.33. 끝.

